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기업 및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에 제5항~제7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된 법령에 기초하여 명확히 정비(안 제3조)
- 나. 지원 범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4조)

- 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을 “구성, 기능” 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안 제10조)
- 마. 그 밖에 시책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에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사업” 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 받은 자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

7.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을 “구성,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환경개선”을 “환경개선 및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5. (생략)</p> <p>제4조(지원 범위)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지원 대상)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자</u></p> <p>6. <u>「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u></p> <p>7. <u>「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u></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4조(지원 범위)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u></p>

3.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시장은 육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육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

② 제4조제1항제4호-----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 기능 -----
-----.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

-----.

1. (현행과 같음)

2. ----- 환경개선 및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 사업

3. (생략)

<신설>

3. (현행과 같음)

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
해 예방을 위한 사업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